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의안 번호	406호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맞벌이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 만으로는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구립 돌봄센터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아래 센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모	정원	위탁운영법인	위탁운영기간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종암로19길 18	414.6㎡	49	종암중앙교회	2017.2.1.~ 2022.1.31.

-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라. 위탁사업의 범위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